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

# 의정정보

Chung Nam Council Information

3

2015-3호

Chung Cheong Nam-Do Council Information

● 의정 회고

- 반갑습니다, 의원님 !!  
정선홍 前 부의장 인터뷰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행정안전부 등 6건

● 최근 기초의회 제·개정 조례

- 구미시 등 4건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등 3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규칙 등 2건

● 대법원 판례 정보

-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 등 3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Contents

## 의정회고

- ▶ 반갑습니다, 의원님!! – 정선희 前 부의장 인터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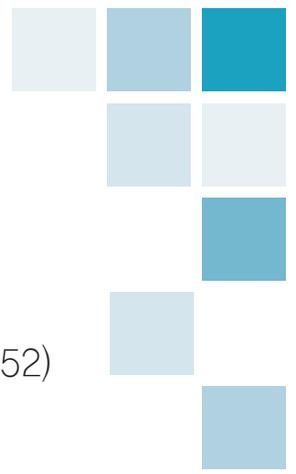
##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 100억 들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뽑는다 (행안부) (23)
- ▶ 여야 의원 공동으로 ‘노인복지조례’ 발의 (부산광역시) (25)
- ▶ 전국 최초로 인천시교육청 교복 구매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26)
- ▶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광주광역시) (27)
- ▶ 반값 중개 수수료 수용 (경기도) (29)
- ▶ 내달부터 유상급식 (경상남도) (31)

## 최근 기초의회 제·개정 조례

- ▶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구미시) (34)
- ▶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영암군) (38)
- ▶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천안시) (42)
-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포항시) (45)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50)
- ▶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52)
- ▶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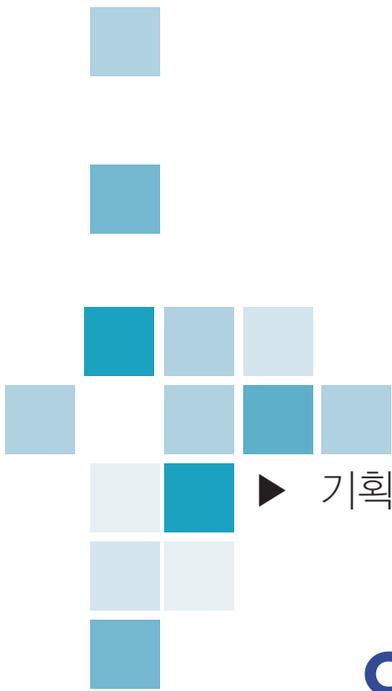
## 최근 제·개정 법령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규칙 (64)
-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 대법원 판례 정보

- ▶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 (73)
- ▶ 정치자금법 위반 판례 (75)
- ▶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의 소 판례 (77)





▶ 기획 시리즈

# 의정 회고 (4)

「반갑습니다, 의원님!! - 정선희 전 부의장」



# 반갑습니다, 의원님 !!



## 정선희 前 부의장 약력

- 덕수상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3년 중퇴(경제과)
- 국가대표 배구 선수 주장(1958-1966년)
- (주)유공 17년 근무(여자배구팀 감독 및 부장 퇴직)
- 제4·5·6·7대 충남도의회 의원
- 5대 후반기 부의장
- 현, 애국지사 고 정상길 장손으로 광복회원
- 현, 청양군 독립유공자 유족회장
- 현, 정씨 전국연합중앙회 이사
- 현, 청양군 체육발전위원회 위원장

## 충청남도의회 정선희 前 부의장 (4,5,6,7대 도의원)

모든 일을 “正心, 正見, 正道, 正言, 正行” 평생 실천으로...

벚꽃이 만개한 4월 어느 날 충남도의회 4대부터 7대까지 4선 의원을 지낸 정선희 전 부의장을 청양우체국 옆 허름한 시골 다방에서 만났다.

국가대표 배구선수 생활로 단련된 그는 70고희를 훌쩍 넘어 77희수를 살고 있지만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안희정 지사의 도지사로서의 리더십을 어떻게 보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안희정 지사 큰일을 해낼 사람”이라며 “충청인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사 혼자 할 수 없다”며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정객의 이 발언은 애항·애국심을 바탕으로 말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이다.

도의원의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대해선 “일을 겁내서는 안 된다”며 “어떤 상대와도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다”라고 후배 의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자신이 원하는 바는 간단명료하게 전달하고, 중요한 사안일수록 두세 번 되풀이해 확인해야 하며 일의 진행이 확정된 다음에는 부지런하고 독심 있게 행동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도의원은 지역을 대표하지만 도정을 살필 땐 도민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지역이기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선흥(鄭善興) 의원은 1938년 10월 12일, 충남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원동 129번지에서 아버지 정세환(鄭世煥) 선생과 어머니 박성순(朴性順) 여사의 5남 5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정 부의장은 청양중학교 재학시절 배구선수로 명성을 날려 당시 배구 명문 덕수상고로 스카웃 됐으며 성균관대학교(경제과)에 진학했다. 이후 한국전력 배구선수와 감독을 거쳐 1967년부터 1984년까지 SK(유공)에서 배구감독 및 판매과장으로 재직했다. 특히 1958년부터 1966년까지 한국대표 배구선수 주장으로 활동해 국위선양에 앞장섰다.

그는 182cm의 키에 100kg이 넘는 우람한 체격, 보기 드문 호남형으로 어디를 가든지 분위기를 압도한다.

성철 스님과 승려이면서 독립운동가인 한용운 선생, 김구 선생을 존경한다는 그는 좌우명으로 “正心, 正見, 正道, 正言, 正行”, 감명 받은 책은 중3 때 읽은 ‘슈바이처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족으로는 이명희(71세) 여사와 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으며 큰아들(정운현, 46세)이 충남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며, 남들이 꺼리는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 하는 인간미 넘치는 인물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 - 요즈음 어떻게 지내십니까?

주로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1주일에 한두 번 고향인 청양에 와서 청양군 독립유공자 유족회장으로서 또 청양군 체육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 오면 꼭 들리는 곳은 조상님 산소입니다. 이곳에서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청양발전을 위한 구상도 합니다. 청양군이 칠갑산 자락에 있어 빼어난 경관과 깨끗한 물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청양군을 힐링 관광 명소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입니다.

푸른 산과 따사로운 햇볕의 고장이라 푸를 청(靑), 별 양(陽)을 쓰는 충남도 청양군은 이름처럼 산이 깊고 나무가 울창해 맑고 상쾌한 공기에 마을 분위기도 정겹습니다. 동양의 알프스라 불리는 칠갑산을 품고 있는 삶의 터전에는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합니다.

- 건강은 어떠한지 ?

아직까지는 건강에 큰 문제는 없지만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점프를 한 탓인지 가끔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증조부이신 정종호(鄭宗浩)선생은 동학군으로 활동하시고 조부님이신 정상길(鄭相吉)선생은 항일독립운동을 하셨는지요?

저의 증조부님은 녹두장군으로 통하는 전봉준 장군을 도와 청양지방에서 동학 농민운동에 참여하여 활동 하셨습니다. 조부님은 상해임시정부 청원애국당(단장 김항덕) 소속으로 충남의 독립자금 총책을 맡아 보셨습니다.

조부님은 소 두 마리와 문전옥답 일곱 마지기를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내놓았는데 증조부님은 조부님의 이런 행위를 놓고 한 번도 걱정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당시 조부님은 25세의 나이에 시집살이를 하는 아내와 다섯 살 난 아들 즉, 우리 아버지를 버리고 가출하여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일제 강점기에 많은 핍박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부님의 나라사랑 열정을 탓하거나 원망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의 애국심을 투철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부님의 가르침에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금전적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조상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려 노력한 결과, 명예로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맡은 직을 성실히 수행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 - 국가대표 배구선수 시절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제18회 동계올림픽 아시아지역 지역선발전이 기억에 남습니다. 1963년 12월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이긴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배구는 9인조였습니다. 6인조는 동구권이 하는 것이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 운동이라고 금지했는데, 올림픽은 6인조 경기라서 난감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반공포로 가운데 배구선수로 활약했던 4명이 있어 이들과 선수단을 꾸리고 이 대회 출전을 위해 피눈물 나는 훈련을 3년간 했습니다.

당시 제가 기수 겸 주장으로 출전했으며 첫 게임을 남과 북이 숙명의 한판 승부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18년 만에 숙명의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은 한국 여자배구는 북한과 해 볼만 하지만 남자 배구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북한배구팀 감독은 반공포로 출신 우리선수와 함께 운동했던 친구로 북에서 장군으로 진급해 북팀을 총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선수 이름을 부르며 “너 전사한 것으로 처리 됐는데 안 죽었구나 야!”라고 반가움을 표시 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승승장구를 보여 우리선수의 기를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반공포로 석방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기결과, 1세트에 우리나라가 7:15로 패했고, 2세트에선 15:7로 승리했습니다. 3세트에서 우리나라가 8:12로 지고 있을 때 감독님께서 벤치에 있는 나를 투입하며 “재네들 하는 것을 봐라. 이판사판(저도 그만)이니 네가 나가서 한번 붙어봐라”라고 말했습니다. 서브를 넣는데 너무 긴장해서인지 공이 흔들리며 넘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서부에 북한 팀이 당황했고, 내리 서브 포인트를 얻어 결국 15:12로 따냈습니다. 또 여세를 모아 4세트에서 15:3으로 승리했습니다.

당시 뉴델리 언론에서는 ‘럭키보이 정선흥’이라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한국배구가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때의 기억을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 국가대표 배구선수 출신이 유공(SK)에서 부장까지 진급했는데 직장생활은 순탄 했나요?

제가 성균관대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 배구선수로 선발되어 1958년부터 1966년까지 8년간 국가대표 주장으로 활약했습니다. 대학 3학년 재학 때인 1962년 한국전력에 배구선수로 스카웃 돼 국가대표를 끝마치는 1966년까지 근무했습니다.

이후 1967년 유공 여자배구팀을 창설하고 감독으로 입사해 어린 여자선수들을 혹독하게 훈련, 창단 첫해 꼴찌였던 팀을 다음해 2위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어찌나 훈련이 혹독했던지 선수들 등가죽에 굳은살(callus)이 박혀 참담함은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성적향상을 위해 이렇게 가혹한 훈련을 어린선수들에게 강요한 제가 갑자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감독직을 포기하고 판매부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제게 업무배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주지 않으면 다시 배구감독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 저에게 첫 업무가 배당 됐습니다. 공군 준장 출신의 한 대리점 사장이 부도를 내고 잠적을 했으니 채권을 회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불가능한 채권회수를 지시한 것으로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옷을 벗으라는 압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이 좋았는지 채무자가 장군 출신이어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장군 출신은 자존심(자긍심)이 강하며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이를 이용한 것이 적중했던 것입니다.



### - 인생철학이 있다면 ?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붓글씨로 “正心, 正見, 正道, 正言, 正行”을 써서 액자에 넣어 안방에 걸어두고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고, 보는 것을 확실히 하며, 올바른 길, 말을 올바르게 하며, 행위를 바로 하라는 것으로 저는 이를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수신의 핵심은 정심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음에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신을 올바르게 하려면 마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명심하고 실행해 삶의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1973년 대한석유공사(유공) 판매과장으로 재직할 때입니다. 당시 1차 오일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기름 배정업무를 맡길 사람으로 저를 지목했습니다. 뇌물이 오갈 수 있는 자리라서 회사가 고심 끝에 저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운동 선수출신이라서 고지식하고 눈속임이 없다는 게 발탁 배경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름이 없으면 고로의 불이 꺼져 하루 수십억 원을 손해 보는 시멘트회사, 제철소, 유리공장 등에서 기름 확보를 위해 뇌물공세를 펼쳤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당시 서울에서 제일 비싼 용산 멘션 40평을 하루 한 채씩 뇌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거절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려면 상품권 10만 원짜리 3장을 마련해 사무실 여직원에게 맡기도록 했고 이렇게 모은 상품권을 서울사무소와 본사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뇌물 사건이 터져 이 업무를 담당했던 7명이 구속 됐습니다. 저도 서울시경 303수사대에 4번씩 불려가 조사를 받았지만 뇌물을 받을 사실이 없어 무사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불려간 것은 수사 결과, 배달사고로 확인 됐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가르침으로 “正心見道言行”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 왔기에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 “감정의 맹목적이 인격을 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살아 왔습니다. 사람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의 집안이 독립운동가 집안이라며 애국지사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사랑과 미움, 복종과 반항, 쾌와 고(苦) 등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고(?)를 친다면 나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를 웃음꺼리로 만들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일까요? 시경에는 “효자가 한번 나오면 이어서 그 자손에 같은 류(類)의 효자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하하~

#### - 정치입문 배경 & 4-7대 의정 평가

'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당시 이봉학 대전시장이 충남도지사 출마를 결심하면서 제게 도의원 출마를 권유해 청양을 지역구로 4대 도의원에 당선 됐습니다. 이후 5, 6, 7대에 청양에서 도전하여 당선됨으로써 4선 의원 된 것입니다.

청양에서 일제강점기 10년간 집배원을 하다가 해방 후 30년간 청양우체국장을 하신 아버님의 후광으로 어려움 없이 당선 됐습니다. 특히 증조부님께서 동학혁명에 참여하시고, 조부님께서도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청양에선 우리집안을 독립운동가 집안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서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한 4-7대까지를 보면, 제4대 충청도의회는 불안정한 부활기를 벗어나서 제도와 운영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정착되어 시행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5대 지방선거는 모든 영역에서 직선제로 선출함에 따라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가 됐으며,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되는 실질적인 시작점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6대 지방선거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과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광역의원은 시·군·구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3인에서 2인으로 선출하는 등 제5대 지방 선거보다 정수가 대폭 축소, 청양의 경우 2명이던 도의원 정원이 1명으로 됐습니다.

제7대는 자율성 등을 확대하기 위해, 종전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시행하던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서 선택적으로 하는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의정활동을 했던 4대부터 7대는 지방자치제가 재생해 선출직 공직자가 주체가 됐다는 점에서 관의 성격이었고, 자치제의 목적은 국민 불만의 완화차원 등 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4-7대 충청도의회는 효율성 차원의 성과도 두드러졌습니다.

도의회는 단체장의 견제를 통해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공헌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를 통해 편향된 정책이 시정되어 주민들의 선별주의적·보편주의적 복지가 성장과 적절히 병행되어 그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제고된 것입니다.

또 도의회는 단체장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단체장의 예산편성 등에는 선심성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영역인 예산심의 및 의결은 집행 전에 단체장을 통제하고, 결산승인은 집행 후에 견제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데 공헌했다는 자평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대변을 통한 민원해소 정착에 앞장섰습니다. 주민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이 아닌 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도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방의회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도의회는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많은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이밖에 도의원들은 다양한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 의원 연찬회, 세미나, 해외 연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전문성과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확인을 통한 현장성을 갖추고자 노력했습니다.

#### - 4선 의원으로서 보람 있게 생각하는 일과 아쉬움이 있다면

가장 보람이라면 제 고향 청양에 문화체육센터와 도립청양대를 유치한 것입니다. 아쉬움으로는 유치가 확정된 도립사격장이 이기주의로 무산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청양대 유치는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청양에 선거유세를 왔을 때 지역공약사업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몹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진이 당황하고 있어서 제가 메모에다 도립대학유치를 적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김영삼 당시 대통령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청양에 도립대학을 세우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 된 후 제가 국회에 찾아가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행하라고 졸랐고, 이석기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이 5000명의 건의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통장들과 보험 모집인을 동원 3일 만에 2000명의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하며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음에도 교육부는 예산 타령만 늘어놓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장에게 교육부 반응을 예기했더니 “그러면 올해 교육부 예산은 한 푼도 안 준다”고 압력(?), 교육부가 충남에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안 된다며 경남, 경북에도 도립대를 설립키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우리에게 시설비를 30억씩 5년간 주고 3년간 운영비로 20억을 3년간 줬습니다. 그러나 다른 2곳은 사업비를 충남의 절반도 못 받았습니다.

청양 문화체육센터 유치는 서울체육회 부장으로 있는 후배가 “선배님 체육회가 마사회와 함께 농어촌지역에 체육관 4개를 지어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당시 박태권 체육부차관을 찾아가 지사님으로 오시면 잘 모시겠으니 청양에 체육관을 하나 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는 몰라도 청양군수와 제가 1993년 10월 26일 천안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참관하고 있는데 마사회와 체육회에서 실사를 나왔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급히 청양으로 내려온 군수와 제가 실사팀(2명)을 맞아 부지를 보여주고 극진히 대접(?) 했습니다. 사실 청양에는 술집도 없고 해서 온양으로 올라가 목욕을 함께하며 간곡히 부탁했더니 “실사를 몇 군데 다녀 봤으나 군수님과 도의원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것에 감동했다”며 차관님께 잘 말씀드리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섭섭한 것은 제가 체육회 실무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독립사격장을 유치기로 합의가 돼 부지까지 사 놓았는데 저의 군수출마설이 퍼지면서 저를 견제하려고 독립사격장 유치를 반대하는 바람에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이 놓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 지역기반이 든든해 충분히 5선이 가능해 의장을 하실 수 있었는데 은퇴했다. 아쉬움은 없었나 ?

제가 은퇴 할 때 나이가 68세였습니다. 그때 은퇴하는 도청 간부공무원들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아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것. 잘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장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것은 제가 당시 자민련 의원협의회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의 화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명심보감에 “그릇은 가득차면 넘치고 사람은 가득차면 잃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은 곡식이나 물이 가득 차면 넘치게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부나 지위가 가득차면, 그 부나 지위를 잃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부귀를 욕심내서는 안 되고, 또 부귀해질수록 겸손하고 근검절약 하며 조촘하고 노력해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 - 현재 도의회 및 도에 대한 평가

10대 충남도의회가 개원 초기 원구성에 대한 잡음이 들리고 최근 천안고교 평준화 조례 제정 문제로 시끄럽기는 했지만, 김기영 의장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안심 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도의회가 여소야대로 집행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후배 의원님들을 믿고 있습니다. 도민의 선택은 집행부의 전횡을 견제하라는 것이지 ‘묻지마식’ 반대를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충남도의회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들어섰습니다. 도청의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내포에 새롭게 동지를 틀었습니다. 환 황해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충청남도도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왔다는 평가입니다.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지방의회로서 오늘의 충남도를 만든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남도는 안희정 지사의 리더십을 구심점으로 삼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바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도민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을 위해, 견제할 땐 견제하고, 협력할 땐 협력할 수 있을 때 충남도가 추구하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미래는 분명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 선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평가제 도입에 대한 견해는 ?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평가제는 꼭 필요합니다.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일정한 주기로 그간의 실적을 평가해 업무과정에서 나타난 제 문제를 찾아 이를 반영하는 환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업무의 중요성으로 볼 때 도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서에 비해 덜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의회 의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 의원 전문성은 결국 지방의회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훈련법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

의원들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 방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의회 핵심기능은 조례 제·개정권과 예산·결산(안) 심사 그리고 집행부 견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의원들이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이 몇 시간의 교육을 통해 개선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결산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결산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들을 찾아가 자문을 받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충남도의회가 의원들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각종 정책연구회와 의원연구모임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교육의무화 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의원활동을 지원할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자문을 받는다면 부족하게 느껴지는 의원들의 전문성도 보충될 것이라 믿습니다.



## -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에 대한 견해는 ?

요즈음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의원 보좌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해당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고, 인사발령에 의해 집행부로 발령 때 불이익을 예상해 소신껏 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등이 어려운 실정이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의회 규모가 작아 인사적체가 예상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통상 직급별 인원이 많아야 보직순환과 승진기회를 통해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 규모가 작아서 인사권을 독립하면 인사적체가 심화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피감기관인 자치단체장이 감사기관인 지방의회 직원들을 임명한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으므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잘 활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즉, 의장과 도지사가 상호 신뢰 속에서 협조하면 인사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의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권한을 행사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 후배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어떤 상대와도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는 간단명료하게 전달하고, 중요한 사안일수록 두세 번 되풀이해 확인해야 하며 일의 진행이 확정된 다음에는 부지런하고 똑심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고 원인에 관심을 가지면 결과에도 동정심을 갖게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공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사람관리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서로 어울려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S 니렌버그 박사는 그의 저서 ‘사람을 사귀는 비결’에서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 것인 양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10년 넘게 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프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은 늘 계획과 예상을 빗나가게 마련이니,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변수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연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쥘 르나르(Jules Renard, 1864~1910)는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결점만 꼬집어 내려하지 말라는 뜻이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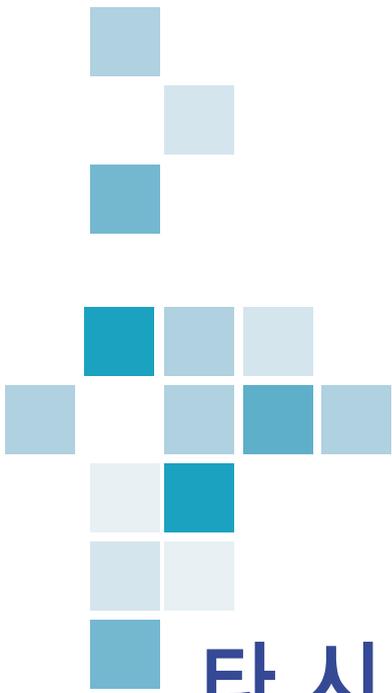
집행부 공직자들은 주사보만 되어도 그 분야에선 박사이상의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공직자로서의 자존심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도민이 행복한 충남구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감정소모로 인해 심리적 피로감을 느낍니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논리보다는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 역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소통은커녕 감정만 포화상태에 빠져버리는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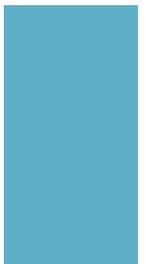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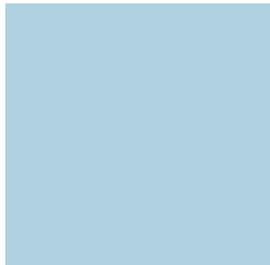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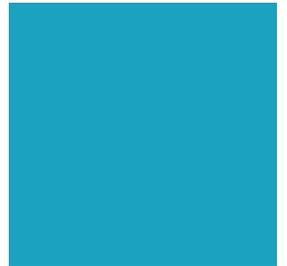
이처럼 원치 않는 상황이 왔을 때 선불리 감정적 대응과 가치 판단을 하기 보다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논리적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행동, 아니 어쩌면 그의 인간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담.정리 : 김기룡 신아일보 부국장 [press@shinailbo.co.kr](mailto:press@shinailbo.co.kr)



#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 100억 들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뽑는다

광역시·도 의회에 보좌관 대신 상임위원 석·박사급 배치,  
정부, 法개정안 7월 발의 예정

내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의회에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206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된다. 의원 1인당 한 명씩 보좌관을 두는 유급보좌관제 대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뽑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오는 7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올초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정책지원관제 도입에 대한 협의를 끝냈고 다음달께 당정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6급과 7급 정책자문관을 한 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 시·도 의회 상임위원회는 103개로, 총 206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된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유일하게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제를 시행 중이다. 정책지원관의 평균 연봉은 각종 수당 등을 합치면 40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행자부 설명이다. 이를 포함해 정책지원관 운영비로 연간 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예산은 각 지자체가 부담한다.

전국 지방의회는 그동안 지자체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방 의원들의 각종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유급보좌관제 대신 상임위원회별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뽑는 정책지원관제를 도입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들은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에 배치된다.

행자부는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인사 권한을 해당 지자체장이 아닌 지방의회에 넘겨주기로 했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 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책지원관 채용에서 인사까지 모든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기겠다는 게 행자부 설명이다.

정책지원관 채용·인사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시간제 임시직 보좌인력 5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친인척이 상당수 뽑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현웅 행자부 선거의회과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방의원들이 정책지원관 인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mailto:kkm1026@hankyung.com)



## 2. 부산광역시의회

### 부산시의회 여야 의원 공동으로 노인복지조례 발의

부산시의회 여야 의원이 함께 노인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눈길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진수(동래3), 같은 당 이종진(북구3), 새정치민주연합 정명희(비례) 의원은 9일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부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부산시는 5년마다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조례안은 규정하고 있다.

또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고용촉진과 직업안정 지원, 노인친화공원 조성, 주택개량 지원 등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시에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례안 마련에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진수 의원은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령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창수 기자 pcs@yna.co.kr



### 3. 인천광역시의회

#### 전국 최초로 인천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 마련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인천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을 발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인천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11일 교육위원회 조례심사에서 원안가결돼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2015년부터 교복 구매에 대해 학교가 공적으로 개입하는 학교 주관 구매 등 교복 구매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복 구매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학생은 품질 좋은 교복 착용을, 더 나아가 교복가격의 안정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인천시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은 학교의 교복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의 지원 책무와 교육감 소속으로 교복구매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다.

양순열 기자 [press@incheonnews.com](mailto:press@incheonnews.com)



## 4. 광주광역시의회

### 광주시의회,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최저임금 5천580원보다 많은 생활임금제 도입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최저임금 5천580원보다 많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히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제도이다.

현재 서울시는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한해 정부의 최저 임금보다 많은 6천687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지난 19일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진숙 광주시의원과 박병규 광주시사회통합추진단장, 신명근 광주노동센터 소장, 명등룡 광주비정규직센터 소장, 최정열 한국노총 부의장, 탁경숙 광주여성노동자회장, 이소형 공공운수노조 광전지부 조직국장 등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생활임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간담회에서 “광주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문화·주거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생활임금을 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150%수준을 생활임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시의원은 “시장은 광주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자 할 때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내용을 계약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나아가 생활임금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광주에 소재한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액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시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임금 조례’를 오는 4월 회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mailto:hun7334@namdonews.com)



## 5. 경기도의회

### 반값 중개 수수료' 경기도의회 수용

경기도의회가 논란을 빚은 부동산중개 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

경기도의회가 논란을 빚은 부동산중개 수수료 조례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1000분의5, 1000분의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반값 중개수수료 안'으로 불린다.

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에 도가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자 이를 무시한 채 현행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한요율제는 수수료 상한을 정해 놓고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는 반면 고정요율제는 부동산 거래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매기는 것으로 중개사에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

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도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논란이 일자 양당 대표와 협의,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여야 대표단 13명이 공동발의로 국토부 권고안을 담은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 통과시킨 것이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은 강원도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두 번째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6. 경상남도의회

###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 조례 통과, 내달부터 유상급식

경상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재원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돌려 쓰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

경상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재원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돌려 쓰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다음달부터 무상급식이 끊기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4인가구 기준 약 250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에게 1인당 1년간 50만원 정도의 교육바우처(이용권) 등을 나눠준다는 내용이다. 바우처는 EBS 교재비와 각종 온라인 수강, 학습교재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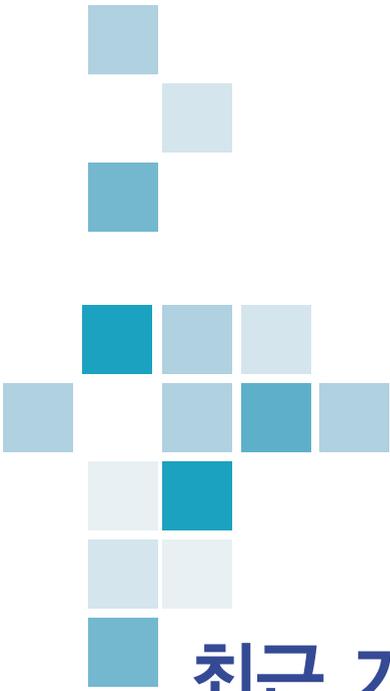
경남도내 학생 중 약 10만 명이 지원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바우처를 지급한다. 조례안은 서민 가정 학생들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도의원 55명 중 4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 7표, 기권 4표였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51명 중 일부는 반대 또는 기권했다. 이날 도의회장 밖에서는 학부모 500여 명이 모여 "조례안을 폐기하고 무상급식을 이어가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경남도와 시·군이 올해부터 주지 않기로 한 무상급식 지원금 643억원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교육청 예산만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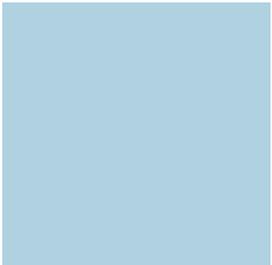
로 급식을 실시하던 경남도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대해 유상급식을 하게 됐다. 부담금은 초등생이 한 달 4만 5000원, 중학생 5만1500원, 고교생 6만2100원이다.

이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경남 창원시 풀만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2013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이 발의한 뒤 계속 국회에 계류중이다.

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mailto:we@joongang.co.kr)



# 최근 기초의회 제 · 개정 조례



# 1.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1. 제정이유

홀로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형성과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제2조, 제3조)
- 나.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 다.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 라.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제7조)

### 시 사 점

- 노인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 이를 방지하는 제도 마련



##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2015.03.11 조례 제10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사는 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사는 노인”이란 직계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사는 노인 생활 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홀로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 생활 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홀로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홀로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시 관내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을 참작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읍면동사무소 이(통)·반장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 생활 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에 한정하여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독거노인 공동 주거시설 설치 및 시설 운영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040호, 201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1. 제정이유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 성공자 지원 사항 및 학생들을 학교금연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의 사항을 반영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적용범위(제2조, 제3조)
- 나. 금연 구역의 지정(제5조)
- 다.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제6조)
- 라.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구역 지정(제7조, 제8조)
- 마.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

#### 시 사 점

-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2013.05.09 조례 제2095호

(일부개정) 2015.03.19 조례 제21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3.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3.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영암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영암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 지정목적과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고,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 ①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흡연구역을 설치할 때 자연환기가 가능하지 않으면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흡연구역 안내판의 모양 및 표시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관내 사업장과 금연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 성공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3. 19)

⑥ 군수는 관내 학교의 금연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금연 홍보요원으로 위촉하고 금연홍보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5. 3. 19)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영암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 부 칙(2015. 3. 19 조2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조례

#### 1. 제정이유

천안시 거주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노인에게 이미용비 일부를 지원, 사기진작과 심신의 건강유지 등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제2조)

- 지급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 함.
-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당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함.

나.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에 대한 규정(제3조)

-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관내 이미용업소 이용요금 상당의 이미용권)을 지급하고, 서비스권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함.
- 연 이미용권 4매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시 사 점

-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노인 복지 확충



##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2015.03.23 조례 제14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 한다.

②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당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노인 이미용비를 그 내용으로 하고, 현금이 아닌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관내 이미용업소 이용요금 상당의 이미용권)을 지급하며, 서비스권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매년 효도복지서비스권(이미용권) 4매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조사 및 결정) ① 각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관할 구역 내 지원 대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서 지원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급 시기) 시장은 제3조제1항의 효도복지서비스권을 각 읍·면·동장을 통해 매 반기 첫 달 5일부터 반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제6조(효도복지서비스권의 사용) 효도복지서비스권은 관내에 위치한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효도복지서비스권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① 시장은 이미용사회천안시지부장과 「이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

으며, 이미용사회천안시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시장에게 직접 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미용사회천안시지부장 또는 시장에게 직접 사업비를 청구하는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복지서비스(이미용비)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효도복지서비스(이미용비) 청구내역, 사용한 이미용권 및 통장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효도복지서비스권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사업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효도복지서비스권의 교부관리 등) 각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명부에 효도복지서비스권의 배부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1. 제정이유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7조)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마.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

### 시 사 점

-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

##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2015.03.24 조례 제12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4조(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각 구청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술연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경관 조례」에 따른 포항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교육청, 관할 지방검찰청, 관할 지방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시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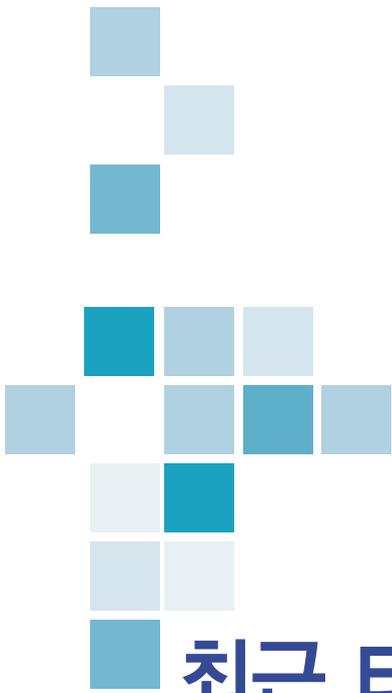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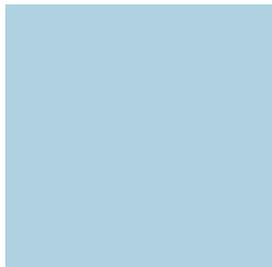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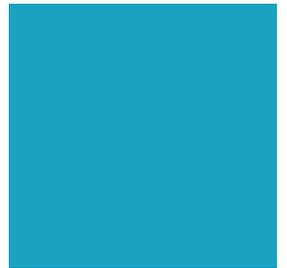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1.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1. 제정이유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병역명문가”란 3대가족 이상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족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함

나.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인천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안 제5조)

### 시 사 점

-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3-02 조례 제 54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서 각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03-02 조례 제5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자원에 관한 조례

### 1. 개정이유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호혜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원칙(제1~2조)
- 나. 도지사의 책무(제4조)
-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7~8조)
- 라. 사업 및 지원(제10~11조)
- 마. 따복공동체위원회 관련(제19~27조)
- 바.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등(제28~32조)

#### 시 사 점

-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호혜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8-01 조례 제 4433호

(전부개정) 2013-08-05 조례 제 4584호

(전부개정) 2015-03-03 조례 제 4860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호혜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5.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6.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7. 인적·물적 환경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조성·운영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하며 주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협력을 통해 형성한 삶터(공간), 사람(조직) 및 공동체(관계)가 통합된 집단을 말한다.
2.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이하 “따복공동체”라 한다)”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따복공동체 만들기”란 마을과 주민이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따복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공유)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시·군 및 주민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따복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따복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따복공동체 만들기 정책 방향
2. 경기도 따복공동체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 경기도 따복공동체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5.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계별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2. 사업별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경기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협의회) 도지사는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및 시·군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따복공동체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도지사는 따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3. 따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가 육성 등 교육사업
4.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5. 마을경관·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6. 주민의 주거 및 복지증진 사업
7. 마을의 문화·예술 및 전통·역사의 계승 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원) 도지사는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군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민간단체 및 기관의 네트워크 활성화, 전문가·활동가 파견 및 재능기부자의 발굴·육성
3. 따복공동체 관련 연구·조사·교육 등
4. 자원 관리 및 기록 보관
5.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유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2조(공모계획 수립 · 공고) 도지사는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에서 공모계획을 수립·공고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신청) ①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제8조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동일한 단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신청서와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사업 선정)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는 사업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따복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선정심의회는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보고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주민은 그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따복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전문가·민간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의 반환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형성재산의 사용)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장 경기도 따복공동체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따복공동체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 따복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따복공동체 업무담당 실·국장 및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활동가 및 주민

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따복공동체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1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위원이 소속된 실·국의 담당과장을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때
3.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등

제28조(설치)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행
3. 제10조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 및 지원 활동
4. 제12조에 따른 공모계획의 수립·공고

제30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31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해제 또는 해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사업비,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따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종전의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경기도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3.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1. 제정이유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2. 주요내용

- 가.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등을 제외하고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보건 복지 증진 및 교육,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 사업으로 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안 제5조)

#### 시 사 점

-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3-01 조례 제 44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국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국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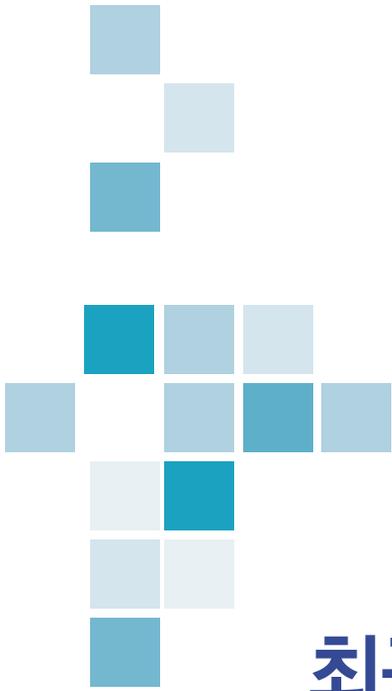
1. 업무제휴·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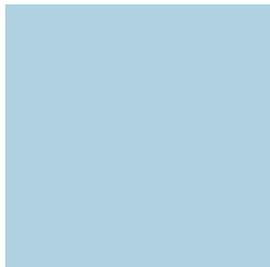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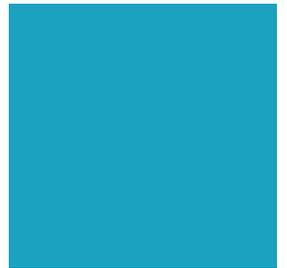
####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최근 제 · 개정 법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 1. 개정이유

영어(營漁)비용 절감을 통한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면세유 공급 대상 어업기계에 어업활동에 필수적이고 면세유의 부정유통 소지가 적은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를 추가

### 2.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공장 출고 시점 및 보유현황 신고 시점과 관계 없이 모든 농업용 난방기를 경유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 사 점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추가 등 면세유의 안전 유통 기여



## 개정조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를 "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명세서"를 "영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을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으로 한다.

별표 4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업용 크레인
5. 패류선별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91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

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농업용 난방기에"를 "농업용 난방기에"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191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유 면세유 제외에 관한 적용례) 기획재정부령 제65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개정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과 야생동물의 질병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을 구체화

## 2. 주요내용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등급별 해당 종에 관한 기준 마련(제1조의2 신설)

나.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제23조의2 신설)

-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각각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포상금의 지급(제38조제4항 신설)

-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등의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시 사 점

-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등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필요

# 개정조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①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종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제2조제2호 중 "야생생물의 서식실태조사"를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 중 "야생동물"을 각각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공사육된 야생동물"을 "인공 사육 또는 재배된 야생생물"로, "인공사육증명서"를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로,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을 "야생생물의 인공 사육 또는 재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야생동물"을 각각 "야생생물"로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4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목표 및 중점방향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진단 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 질병 관련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질병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기준: 진료실, 입원실, 임시 보호시설 등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구조·치료를 위한 시설물을 갖추어 것

3. 장비기준: 구조차량, 운반장비 및 진료장비 등 구조·치료를 위한 장비를 갖추어 것

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법 제34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제23조의5(야생동물 질병의 통보기관) 법 제34조의7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질병관리본부장을 말한다.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제3항 중 "법 제5조의2에 따른 야생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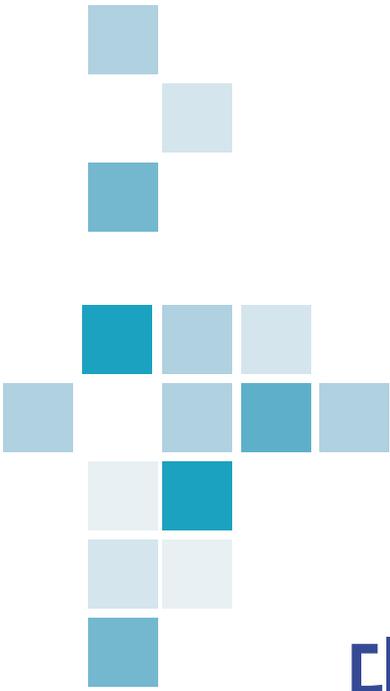
제39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야생동물 포획 등의 허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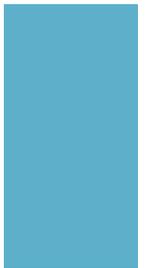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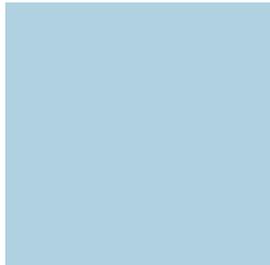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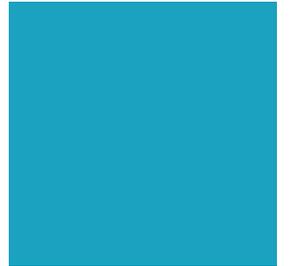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 중 나목·더목 및 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과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3조제6항"을 "법 제2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 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3조제2항제4호"를 "법 제73조제2항제7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대법원 판례 정보





##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수39 판결[공2015상, 482]

### 【판시사항】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제57조의7의 규정 취지 및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후보자선정과 그에 따른 후보자등록의 효력(원칙적 유효)

###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가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제2항) 취지는, 정당이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경선에서 선출된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의 후보자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결과를 보호하고 나아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이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7은 정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이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당의 민주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과 아울러, 어느 정당 내부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선출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특정 후보자 선출의 효력을 부정하면 그 정당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를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결과를 가져와 정당과 이미 제출·등록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

자명부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선거인들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의하지 않고 변경되게 되므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선무효 사유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 경선을 실시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였다면,정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일반적인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후보자선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후보자선정과 이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공2013하,2178]

### 【판시사항】

-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에서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2]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임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법로비를 위하여 협의회 내에서 모금된 자금을 회원 개인 명의의 후원금 명목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자금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에서 정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3] 정치자금 기부자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의 입법 취지와 연혁, 각 규정의 내용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안 될 것이지만,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자금 모집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라고 한다) 임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입법로비를 위하여 청목회 내에서 모금된 특별회비 자금을 회원 개인 명의의 후원금 명목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특별회비 자금은 청목회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이 정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정치자금법 제32조 의 입법 취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가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청탁행위와 알선행위를 모두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탁'은 알선과는 달리 기부행위를 받은 공무원과 분리된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부자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위 조항에 위배된다.



##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의 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추67 판결[공2014상,609]

### 【판시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권한 및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예산낭비에 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거나 예산낭비의 해당성 여부가 전적으로 지방의회의 추상적 가치판단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낭비사례 공개 부분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권의 일환으로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내의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수입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예산성과금 지급 부분 조례안이 비록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한 지출절약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상한액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MEMO



## 의 정 정 보

- ❖ 발행일 : 2015년 4월
- ❖ 발행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                   문 경 주  
입법지원팀장                   최 정 업  
입법지원팀 주무관               함 정 업
- ❖ 연락처 : (041) 635-5121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